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중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97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.

발의자 : 김중로 · 신용현 · 김광수
박준영 · 김삼화 · 김경진
황주홍 · 이동섭 · 김종회
이언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형법」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,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,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.

그러나 약취,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,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,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제1항제3호가목).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“제287조, 제288조(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289조(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290조, 제291조, 제292조(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,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,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제294조(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,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,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”를 “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「형법」 제288조, 제289조, 제292조 및 제294조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제72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외한다), 제289조(결혼을
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
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
다), 제290조, 제291조, 제
292조(결혼을 목적으로 한
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
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
의 죄로 약취, 유인 또는
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
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
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
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
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
목적으로 사람을 모집, 운
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
외한다) 및 제294조(결혼
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
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
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
우의 미수범, 결혼을 목적
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
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
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,
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
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
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,

<p>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 3조, 제305조의 죄, 제332 조의 죄(제329조부터 제33 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 정한다) 또는 그 미수죄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 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·제338조 전단·제339조의 미수죄,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 수죄, 제351조(제347조, 제 347조의2, 제348조, 제350 조, 제350조의2의 상습범 으로 한정한다)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63조의 죄</p> <p>나. ~ 바. (생 략)</p> <p>4. · 5. (생 략)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	<p>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